

#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

의안 번호	제374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6. 1. 20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- 나.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에 따라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김포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8기(2023년~2026년)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
- 나. 2025년 시행결과 : 연차별 시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
- 다. 2026년 시행계획 : 제8기 중장기 비전, 추진전략, 추진과제와 연계되도록 수립
- 라. 감염병 대비 계획 :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 자체 조정계획 수립
- 마.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: 대표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설정

## 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 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)
- 나.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
## 4. 예산수반사항

- 가.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·배부 : 25,000원 × 60권 = 1,500천원
- 나.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: 100,000원 × 12명 = 1,200천원
- 다.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문수당 : 100,000원 × 2명 = 200천원

소관 실·과·소		보건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보건행정과장 박 임 순
	팀장 직위·성명	보건행정팀장 김 지 영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보건주사 최 숙 경(☎4003)

**붙임 1**

**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**

□ 제8기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

비전

**시민중심, 건강으로 통(通)하는 김포**

추진  
방향

- ◇ 지역사회 기반 공공보건위기 대응 체계 강화
- ◇ 지역사회 건강 및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격차 해소
- ◇ 건강증진체계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돌봄 강화

추진  
전략  
및  
추진  
과제

**I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**

- ①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
- ② 응급·재난 상시 대응 체계 강화
- ③ 지역사회 보건의료 건강격차 해소
- ④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

**II 시민중심 기반 건강증진 체계구축**

- ①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수명 향상
- ② 만성질환 예방·관리 강화
- ③ 임신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회적 지원 강화

**III 지역사회 내 연계·협력을 통한 평생건강관리**

- ①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 통합관리 및 지원 강화
- ② 지역자원 연계로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
- ③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

□ 제8기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추진과제

비전	추진전략	추진과제	세부추진과제
<p>시민중심, 건강으로 통(通)하는 김포</p>	<p>I. 지역사회 감염병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</p>	<p>① 지역사회 감염병관리 체계 강화</p> <p>② 응급·재난 상시 대응체계 구축</p> <p>③ 지역사회 보건의료 건강격차 해소</p> <p>④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</p>	<p>①-1. 감염병 위기 대비·대응체계 강화 ①-2. 결핵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 ①-3. 영유아·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업</p> <p>②-1. 재난 의료 신속대응반 운영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향상 ②-2.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</p> <p>③-1. 북부권 건강생활실천 강화 ③-2.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다양화 ③-3.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 ③-4. 북부권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</p> <p>④-1.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④-2. 보건지소 기능 강화</p>
	<p>II. 시민중심 기반 건강증진 체계구축</p>	<p>①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수명 향상</p> <p>② 만성질환 예방·관리 강화</p> <p>③ 임신출산 및 영유아건강관리 사회적 지원 강화</p>	<p>①-1. 시민중심 금연지원서비스 ①-2. 건강생활실천 ①-3. 구강보건사업</p> <p>②-1.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②-2. 고혈압·당뇨병 유질환자 의료지원</p> <p>③-1. 모성 건강관리 ③-2. 영유아 건강관리 ③-3. 임신·출산 관련 사회적 지원</p>
	<p>III. 지역사회 내 연계·협력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</p>	<p>① 초고령사회대비 치매 통합관리 및 지원 강화</p> <p>② 지역자원 연계로 취약계층 건강안전망구축</p> <p>③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환경 조성</p>	<p>①-1. 선제적 검사 및 지역사회중심 치매예방사업 ①-2.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매환자 진단·치료·돌봄 ①-3.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</p> <p>②-1.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②-2.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②-3. 암검진 수검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②-4.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한 웰다잉 문화조성</p> <p>③-1. 정신건강증진사업 ③-2. 자살예방사업</p>

**지역보건법 제6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)**

-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1.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 2.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
  4.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지역보건법 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**

-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  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  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  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  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해당 시·군·구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의회에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)**

- ① 시·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(이하 "지역보건의료계획"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1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
  2. 지역현황과 전망
  3.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
  4.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
  5.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·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
  6.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
  7.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1.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
  2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붙임 3

## 대표 성과지표 및 변경사항 등

### 1.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3차년도(2025년) 실적

○ 총 8개 성과지표 중 5개 달성, 3개 미달성

추진전략	성과지표명	구분	목표				실적	
			2023	2024	2025	2026	2025	달성
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	역학조사의 완성도(%)	결과	96.1	96.8	96.9	97.0	100	달성
	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검진율(%)	결과	99.1	99.2	99.3	100	100	달성
시민중심 기반 건강증진체계 구축	연간 체중조절 시도율(%)	결과	67.5	67.8	68.1	68.4	63.3	미달성
	혈압수치 인지율(%)	결과	67.0	67.5	68.0	68.5	57.2	미달성
	임산부 등록관리율(%)	산출	100	100	100	100	106	달성
지역사회 내 연계 협력을 통한 평생건강관리	치매 환자등록 관리자 수(명)	결과	2,892	3,062	3,426	3,495	3,448	달성
	65세이상 어르신 가구원 신규등록수(명)	결과	681	765	773	781	676	미달성
	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(%)	산출	13	14	15	16	15.7	달성

### 2. 제8기 4차년도[2026년] 주요 성과지표 목록

과제번호*	4차년도 주요 성과지표명	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여부	현황 (2025)	목표 (2026)	자료원
I-[1]-1	역학조사의 완성도(%)	○	100%	97%	방역통합정보 관리시스템
I-[1]-2	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검진율(%)	○	100%	100%	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
II-[1]-2	연간 체중조절 시도율(%)	○	63.3%	68.4%	지역사회 건강조사
II-[2]-1	혈압수치 인지율(%)	○	57.2%	68.5%	지역사회 건강조사
II-[3]-1	임산부 등록관리율(%)	○	106%	100%	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
I-[3]-3, III-[1]-2	치매 환자등록 관리자 수(명)	○	3,448명	3,495명	치매안심통합 관리시스템
I-[3]-2, III-[2]-1	65세이상 어르신 가구원 신규등록수(명)	○	676명	781명	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
III-[3]-1	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(%)	○	15.7%	16%	국립정신건강 증진센터

\* 추진전략-추진과제-세부과제의 번호

### 3.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사유

- 변경내용 : 성과지표 1개(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검진율)
- 변경사유 : 제8기 목표치 기 달성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상향 설정

지표명		목표치	목표치 설정 이유
		'26	
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검진율 (%)	변경 전	99.4	2025년 중장기 목표치 조기 달성으로 2026년 목표치 상향 설정
	변경 후	100	

### 4. 감염병 위기 단계별 보건소 업무조정 계획

- 목적 : 감염병 위기 시에도 보건소 본연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건소 업무를 신속 유연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환하여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
- 보건소 업무 위기단계 및 업무조정
  - 2026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조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업무조정 사례표 작성
  -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 조정을 위한 위기단계 총3단계(C,B,A)로 구분
  - 보건소 업무조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시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전환 대비

위기단계	판단기준
C (평시)	·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단계
B (제한)	· 사적모임 금지, 이용인원 제한 등 개인활동에 제한을 두는 단계
A (위기)	· 외출 및 집합·행사 금지 수준 단계